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21.

발의자 : 이재정 · 강병원 · 박광온

윤후덕 · 위성곤 · 윤호중

김철민 · 이학영 · 기동민

추혜선 · 윤관석 · 서형수

송옥주 · 김해영 · 황희

변재일 · 박남춘 · 신경민

이찬열 · 소병훈 · 박주민

이춘석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방청법안」(의안번호 제1034호),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33호), 「지방공

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36호),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3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) 지방자 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 무를 담당하는 특별시·광역 시·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</u></p>	<p>제2조(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